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1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김영철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서상열,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성배,
이종태, 이희원,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6명)

1. 제안이유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건축선 후퇴부분의 미관 유지 등을 위해 도시 관리적 차원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에 관리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 나.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관리 노력의무 부여함(안 제2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15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7조의2(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의 후퇴부분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 등 건축선 지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 (생략) <u><신 설></u>	제15조의2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7조의2(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의 후퇴부분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 등 건축선 지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는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조례 제27조의2(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는 건축선 후퇴부분의 미관 유지 등을 위해 도시 관리적 차원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에 관리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